



GA 자회사 설립 및 운영 관련 법적 쟁점

요 약

최근 보험회사의 GA 자회사 설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함. 보험회사가 GA 자회사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함. 보험회사와 GA 자회사의 관계에 있어서는(예: 보험회사와 GA 자회사가 사무실이나 IT 시스템 등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등) 보험회사의 GA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도 영업양도 해당 여부, 보험설계사의 이동 시 유지관리수수료의 지급 문제, 고객정보 사용 문제 등 보험회사의 GA 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해서 다양한 쟁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법적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겠음

1. 인·허가, 보고 등의 절차 관련

○ 보험회사는 GA 자회사 소유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사전 신고 및 사후 보고를 해야 함

- 보험회사는 자회사 소유 관련 이사회 의사록 사본 등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에 자회사 소유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보험회사가 자회사 소유 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지급여력비율, 유동성비율, 경영실태평가등급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필요함
- 자회사 소유 이후에는, 15일 이내에 자회사의 정관, 주주현황,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등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함

○ GA 자회사는 보험협회에 보험대리점 등록을 해야 함

- 개인보험대리점 자격을 충족하는 1인 이상의 유자격자를 갖추어야 하고(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소속 임직원의 10% 이상이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함), 등록 이후 영업을 위해서는 영업보증금(3억 원 이내에서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의 협의 결정)을 예탁해야 함
- 보험대리점 등록 업무는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 위임이 되어 있으며, 업무 공백을 피하기 위해서는 협회의 등록신청 접수 일정 및 심사기간 등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겠음



CEO Brief

- 보험회사가 GA 자회사를 설립하여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및 인적·물적 시설 등을 GA 자회사로 이동시키는 경우 '영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수 있겠음

2. GA 자회사 설립 및 운영 관련

- GA 자회사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이 있음
 - 보험업감독규정상 보험대리점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을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로 두는 것이 금지되므로, 원칙적으로 보험회사의 임원과 GA 자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임
 -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함
- 보험회사와 GA 자회사의 관계에 있어서는 GA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이 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함
 - 보험업법과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가 금지됨
 -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자회사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교환·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을 하는 행위가 금지됨
 -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금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가 금지됨
 - 보험업감독규정상으로도 보험대리점(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경우)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는 부당한 지원 요구 및 수수가 금지됨
 - 보험회사가 GA 자회사에게 집기·비품을 매각하는 경우, GA 자회사 전용상품이나 프로모션 지원을 하는 경우, GA 자회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GA 자회사와 사무실 공간이나 IT 시스템을 공동사용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임
- 그 밖에도, 보험설계사의 이동 시 유지관리수수료나 기존 시책비 등의 지급 문제, 고객정보 사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준수 문제, 전산시스템 사용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준수 문제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임

백영화 연구위원
pyh@kiri.or.kr